

제 2016-000429호

# 민 간 자 격 등 록 증

1. 등록자격관리자: 한국교사유티센터
2. 사업자등록번호: 101-82-75120
3. 주소(소재지)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57(수송동, 호수빌딩) 4층
4. 대표자

성명: 이기택

생년월일: 1971-04-26

주소: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70(당하동, 당하푸르지오아파트) 307-102호

5. 자격의 종류 및 등급: 마음리더십전문가, 1급, 2급
6. 자격의 검정기준·검정과목·검정방법·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·교육기간·이수기준·평가기준·평가방법에 관한 사항: (민간자격 등록신청시 제출한 「민간자격을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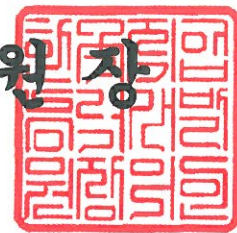
7. 등록에 따른 이행 조건:

- 가. 등록된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자격의 종류와 등록번호, 해당 민간자격관리기관,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.
- 나. 등록된 자격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는 등의 행위는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.
- 다. 등록된 자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, 등록된 자격의 명칭, 등급, 직무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.

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자격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16년 1월 29일

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



관리번호: 015805

# 민간자격 등록에 따른 안내문

귀 기관(단체)에서 신청하신 민간자격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민간자격 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
## <자격기본법 개정에 따른 등록 유의사항>

◆ 「자격기본법」이 2013년 10월 6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하기 이전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, 신청 시 주무부장관\*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
\*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·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함(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의 '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' 참조)

◆ 아울러 '민간자격 신설 및 관리·운영이 금지되는 분야에 대한 세부사항'이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(www.pqi.or.kr)에 해당 관계부처별로 게시됨에 따라, 민간자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참고하여 금지분야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<등록 이후 자격 운영시 주의사항>

◆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할 경우 자격의 종류, 등록 또는 공인번호, 해당자격관리운영자, 자격취득 총비용, 환불규정, 연락처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.

◆ 자격증 발급 또는 자격광고 시 반드시 등록된 '자격명칭'과 '민간자격관리자명'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등록하지 아니한 자격명이나 민간자격관리자명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자격광고를 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상\* 처벌대상인 미등록 자격운영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\* 자격기본법 제39조제1의3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·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◆ 등록된 자격의 종목, 등급 또는 직무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변경등록 절차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그 외 등록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문을 통해 변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등록된 민간자격관리자의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상의 변경\*이 있는 경우, 변경신청 공문에 해당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주소, 대표자, 기관명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기 임원 등

◆ 등록 이후 자격 관련 모든 우편 및 이메일 발송, 기타 안내 및 연락(통지)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회원가입 정보의 기관 주소, 기관 및 실무자의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, 주소,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은 반드시 수시 확인·관리하시기 바랍니다.

\* 관련 정보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등록자격관리자에게 귀속됨

◆ 향후 등록된 자격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'민간자격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'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, 자격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규정한 상태로 운영하거나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자격을 관리·운영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, 등록취소(미이행시)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\* 자격의 관리·운영규정 사례는 '민간자격신청편람'의 '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' 참조